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                |     |
|----------------|-----|
| <b>선<br/>람</b> | 기관장 |
|                |     |

제 78호                      2015. 8. 12(수)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 - 976호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 남원시 공고 제2015- 969호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 공고..... 10

|                |  |  |  |  |  |  |  |  |  |  |
|----------------|--|--|--|--|--|--|--|--|--|--|
| <b>회<br/>람</b>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 2015 - 976호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631-5931),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담당자 서유미(전화 620-79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201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건지원과장

## 1. 제정이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과 옥외영업장 적용대상 및 각각의 시설기준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나. 특례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5조)
- 다. 옥외영업시간의 제한과 옥외영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라. 식품위생법 준용 규정(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시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2. ~ 2015. 9. 2.(21일)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남원시 규칙 제 호

##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

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옥외영업장 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소 및 유원시설업
  3. 지사 또는 시장이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4조에 따른 영업은 예외로 한다.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시간의 제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은 외부의 환경이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구조여야 하며, 미관상 해가 없는 청결한 구조여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            |                                     |
|------------|-------------------------------------|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의견제출 |
|------------|-------------------------------------|

|        |        |  |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  |
|--------|--|
| 3. 의 견 |  |
|--------|--|

|        |  |
|--------|--|
| 4. 기 타 |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8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남원시 공고 제2015- 969호

###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 제3항, 제7조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 남 원 시 장

- 1. 공고기간 : 2015. 8. 14 ~ 8. 27(14일)
- 2.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3.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2015. 8. 28일까지(남원시청 민원과)
  - 서면 제출(별첨 서식)

#### 4.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 변경절차

|                             |                              |                        |                                |                        |                             |
|-----------------------------|------------------------------|------------------------|--------------------------------|------------------------|-----------------------------|
| <b>도로구간 및 도로명<br/>변경 신청</b> | 신청을 받은<br>날부터<br>⇒<br>10일 이내 | <b>주민 의견<br/>수렴 공고</b> | 주민의견수렴<br>한 날부터<br>⇒<br>30일 이내 | <b>도로명주소위원회<br/>심의</b> | 심의 마친<br>날부터<br>⇒<br>10일 이내 |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 14일 이상                 |                                | 도로명주소위원회<br>개최         |                             |

|                        |                              |                       |   |                    |
|------------------------|------------------------------|-----------------------|---|--------------------|
| <b>공고 및<br/>신청인 통보</b> | 공고한<br>날부터<br>⇒<br>30일<br>이내 | <b>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b>   | 동의 얻은 날로부터<br>( 동의 생략 포함 )<br>⇒<br>10일 이내 | <b>고시 및 신청인 통보</b> |
|                        |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심의 결과<br>. 내용 및 절차   |                              | <b>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b> | 동의 만료일부터<br>⇒<br>10일 이내                   |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
|                        |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 결과 통보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공간정보담당(☎620-6136~6139)으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시 홈페이지(www.naw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부여(안) 및 도면

| 일련<br>번호 | 도로<br>위계 | 예비<br>도로명 | 도로<br>길이<br>(m) | 도로폭<br>(m) | 도로구간     |          | 기초<br>간격 | 중심<br>선  | 관할<br>행정구역 | 부여사유                        | 도로명의 결정절차                                    |
|----------|----------|-----------|-----------------|------------|----------|----------|----------|----------|------------|-----------------------------|--|
|          |          |           |                 |            | 시점       | 종점       |          |          |            |                             |  |
| 1        | 길        | 왕벚길       | 720             | 3          | 도면참<br>조 | 도면참<br>조 | 20       | 도면<br>참조 | 보절면        | 진입로 변 왕벚나무 식재 및<br>주소사용자 요청 | 의견수렴(14일) →<br>도로명주소위원회<br>심의 → 고시(효력<br>발생) |
| 2        | 길        | 관음사길      | 840             | 4          | 도면참<br>조 | 도면참<br>조 | 20       | 도면<br>참조 | 보절면        | 관음사로 진입하는 우회도로<br>개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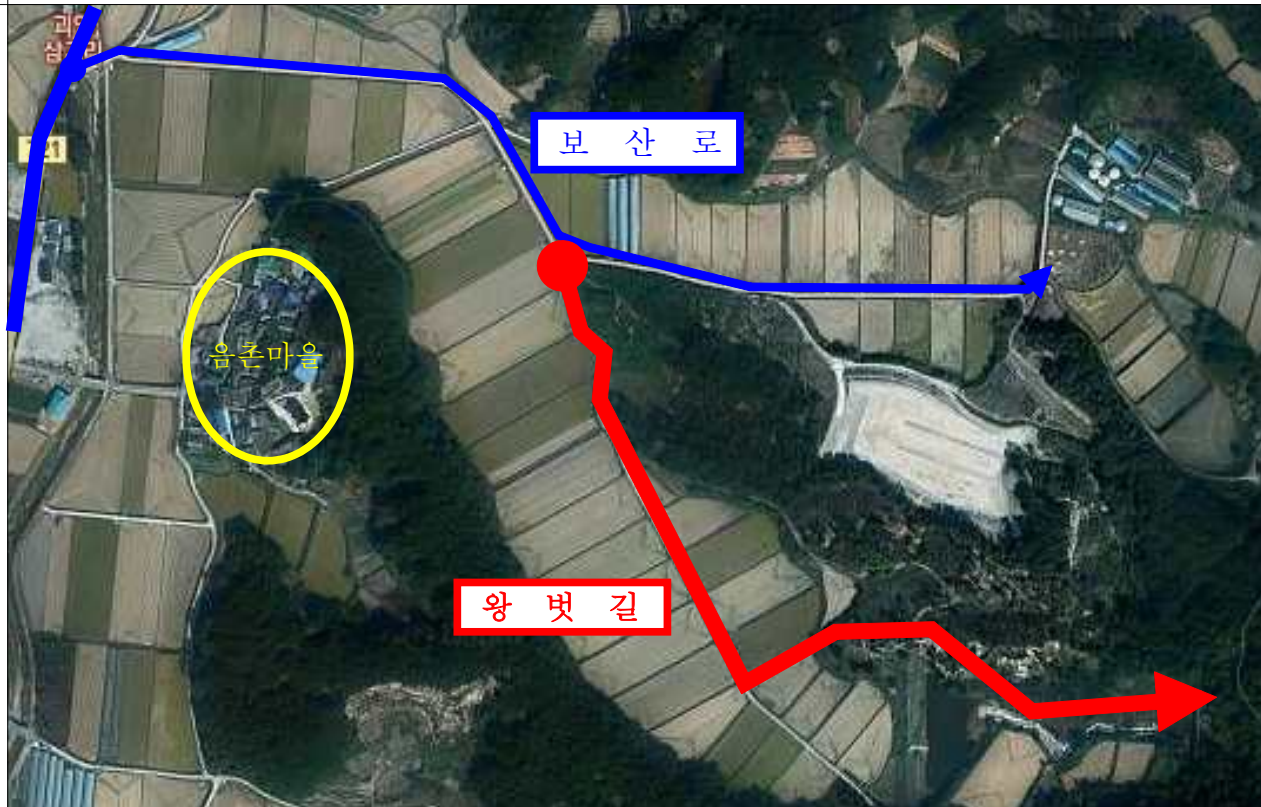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

도로명 부여

심의번호 - 1

| 구 분 |        | 내 용                  | 사유 |
|-----|--------|----------------------|----|
| 개요  | 예비도로명  | <b>왕벚길</b>           |    |
|     | 시작점    | 보절면 괴양리 837-8 (도면참조) |    |
|     | 끝지점    | 보절면 괴양리 27 (도면참조)    |    |
|     | 연장 / 폭 | 720m / 3m            |    |
|     | 중심선    | 도면 참조                |    |

현황도  
(신규:왕벚길)



진입로 변 왕벚나무 식재 및 주소사용자 요청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

도로명 부여

심의번호 - 2

| 구 분 |        | 내 용                  | 사유 |
|-----|--------|----------------------|----|
| 개요  | 예비도로명  | <b>관음사길</b>          |    |
|     | 시작점    | 보절면 서치리 668-1 (도면참조) |    |
|     | 끝지점    | 보절면 서치리 664-1 (도면참조) |    |
|     | 연장 / 폭 | 840m / 3m            |    |
|     | 중심선    | 도면 참조                |    |

현황도  
(신규:관음사길)



관음사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개설

## 도로명 변경(안) 및 도면

| 일련<br>번호 | 현재 도로명 |                 |               |           |          | 변경 도로명 |                 |               |           |          |                 |                |
|----------|--------|-----------------|---------------|-----------|----------|--------|-----------------|---------------|-----------|----------|-----------------|----------------|
|          | 도로명    | 시점              | 종점            | 길이<br>(m) | 폭<br>(m) | 예비도로명  | 시점              | 종점            | 길이<br>(m) | 폭<br>(m) | 기초<br>간격<br>(m) | 변경사유           |
| 1        | 남창윗길   | 수지남창<br>1857-25 | 수지남창<br>887-2 | 429       | 4        | 남창태동길  | 수지남창<br>1857-25 | 수지남창<br>887-2 | 429       | 4        | 20              | “태동”이란 지명 반영   |
| 2        | 광치농공1길 | 광치동<br>781-133  | 광치동<br>195-12 | 285       | 15       | 광치산업1길 | 광치동<br>781-133  | 광치동<br>195-12 | 285       | 15       | 20              | 농공단지 명칭에 맞게 변경 |
| 3        | 광치농공2길 | 용정동<br>753-206  | 광치동<br>781-1  | 1016      | 6        | 광치산업2길 | 용정동<br>753-206  | 광치동<br>781-1  | 1016      | 6        | 20              | 농공단지 명칭에 맞게 변경 |

도로명 변경(안)

도로명 변경

심의번호 - 1

| 구 분                          |         | 기 존                        | 변 경 (안)                    | 비고 |
|------------------------------|---------|----------------------------|----------------------------|----|
| 도<br>로<br>현<br>황             | 도 로 명   | 남창윗길                       | 남창대동길                      |    |
|                              | 시 작 점   |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875-25 (도면참조) |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875-25 (도면참조) |    |
|                              | 끝 지 점   |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887-2 (도면참조)   |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887-2 (도면참조)   |    |
|                              | 연 장 / 폭 | 429m / 4m                  | 429m / 4m                  |    |
|                              | 중 심 선   | 도면참조                       | 도면참조                       |    |
| 현 황 도<br>(변경:남창윗길<br>→남창대동길) |         |                            |                            |    |
| 사 유                          |         | 예부터 불려온 태동이란 지명을 반영        |                            |    |



도로명 변경(안)

도로명 변경

심의번호 - 2

| 구 분                              |                       | 기 존                        | 변 경 (안)                    | 비고 |
|----------------------------------|-----------------------|----------------------------|----------------------------|----|
| 도<br>로<br>현<br>황                 | 도 로 명                 | 광치농공1길                     | 광치산업1길                     |    |
|                                  | 시 작 점                 | 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133 (도면참조) | 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133 (도면참조) |    |
|                                  | 끝 지 점                 | 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195-12 (도면참조)  | 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195-12 (도면참조)  |    |
|                                  | 연 장 / 폭               | 285m / 15m                 | 285m / 15m                 |    |
|                                  | 중 심 선                 | 도면참조                       | 도면참조                       |    |
| 현황도<br>변경<br>(광치농공1길→<br>광치산업1길) |                       |                            |                            |    |
| 사 유                              | 농공단지 명칭 변경에 맞게 도로명 변경 |                            |                            |    |

도로명 변경(안)

도로명 변경

심의번호 - 3

| 구 분                              |                       | 기 존                        | 변 경 (안)                    | 비고 |
|----------------------------------|-----------------------|----------------------------|----------------------------|----|
| 도<br>로<br>현<br>황                 | 도 로 명                 | 광치농공2길                     | 광치산업2길                     |    |
|                                  | 시 작 점                 | 남원시 남원시 용정동 753-206 (도면참조) | 남원시 남원시 용정동 753-206 (도면참조) |    |
|                                  | 끝 지 점                 | 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1 (도면참조)   | 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1 (도면참조)   |    |
|                                  | 연장/폭                  | 1016m / 6m                 | 1016m / 6m                 |    |
|                                  | 중 심 선                 | 도면참조                       | 도면참조                       |    |
| 현황도<br>변경<br>(광치농공2길→<br>광치산업2길) |                       |                            |                            |    |
| 사 유                              | 농공단지 명칭 변경에 맞게 도로명 변경 |                            |                            |    |

# 도로명등[안] 의견서

|        |       |       |          |
|--------|-------|-------|----------|
| 대상 도로명 | 구분( ) | 연번( ) | 해당도로명( ) |
|--------|-------|-------|----------|

의견내용:

|       |  |      |  |     |  |
|-------|--|------|--|-----|--|
| 의견제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  |
|---------|--|
| 주소(사업장) |  |
|---------|--|

